

2018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 내역의 경우 본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내역임을 알려 드립니다.

【목차】

【기업 개요】	3
I. 기업지배구조 정책	4
1. 기업 지배구조 원칙, 기업 지배구조 정책의 운영방향.....	4
2. 기업 지배구조 특징	4
II. 주주	6
1. 주주의 권리	6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13
III. 이사회	16
1. 이사회 운영 현황	16
2. 이사회 관련 정책.....	18
3. 이사회 구성	20
4. 사외이사의 책임	27
5.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30
6. 이사회 운영	31
7. 이사회 내 위원회.....	34
IV. 감사기구	36
1. 내부감사기구	36
2. 외부감사인.....	43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45

【기업 개요】

- (1) 기업명 : 주식회사 한진칼
- (2) 작성 담당자 : 경영관리팀 과장 정영규, 사원 김성근
- (3) 작성 기준일 : 직전 사업년도 말일 (2018년 12월 31일)
- (4) 기업개요

업종		자산규모(연결기준)			상장시장			기업집단 소속 (공정거래법상)	
비금융*	금융	5천억 미만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코스피	코스닥	비상장	해당	비해당
○	-	-	-	○	○	-	-	○**	-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2조에 따라 기존 업종인 금융업에서 당사 연결 매출액 50% 이상을 점유하는 항공여객운수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습니다.

** 당사는 기업집단 한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I. 기업지배구조 정책

1. 기업 지배구조 원칙, 기업 지배구조 정책의 운영방향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 국가 및 사회 공동체 발전 기여를 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안정성,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며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작성 기준일 현재 이사회 총원 6명 중 3명을 사외이사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총원 6명 중 4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 과반으로 구성)를 통해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실제 운영상에서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특정 영역 또는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각각 법률 전문가, 재무/회계 분야 전문가,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및 조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들이 최선의 경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조직을 통하여 이사회 개최 전 이사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경영 정보 및 해당 안건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여 이사들이 심도 있는 논의 및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말 별도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초과가 확정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감사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며 전문성 및 독립성이 적극 발휘되어 기업가치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운영될 예정입니다.

2. 기업 지배구조 특징

① 이사회의 독립성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투명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해 작성 기준일 현재 이사회 총원 6명 중 3명을 (전체 구성원 대비 50%) 사외이사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총원 6명 중 4명을 (전체 구성원 대비 67%)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다각적인 관점을 고려하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이사와 회사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상법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② 위원회 중심의 운영 및 이사회 운영 효율성 제고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3개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법령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며, 내부거래위원회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건에 대해 이사회 의 위임을 받아 심의 및 의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결사항 중 이사회 전원이 함께 검토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도 있으나, 어떤 사안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내 위원회가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며,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감사위원회 이외의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 재결의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신임 사외이사의 이사회 규정 개정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금년 5월 개최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거버넌스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거버넌스위원회의 주된 심의 및 의결 사항 등 운영 방안은 향후 이사회 검토 및 심의를 통해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③ 사외이사의 전문 분야를 고려한 위원회 운영

당사의 사외이사는 법률 전문가, 재무/지배구조 전문가, 회계 전문가, 공정거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사전 검증 등 엄격한 기준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있으며, 신임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당사 및 당그룹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지원조직을 통하여 사외이사의 내실 있는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회계 전문가를 감사위원장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내부거래위원장에 선임하는 등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60%를 사외이사로, 내부거래위원회는 75%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사외이사 중심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II. 주주

1. 주주의 권리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1-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개최 내역

당사는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2주전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직접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 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권유시작일 2일전 위임장을 포함한 참고서류를 DART,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당사는 총 3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임시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당사의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17.01.01 ~ '19.06.03)

구분	제4기 정기주주총회	제5기 정기주주총회	제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17년 03월 07일 (주주총회 17일전)	2018년 03월 07일 (주주총회 16일전)	2019년 03월 14일 (주주총회 15일전)
공고일	2017년 03월 09일 (주주총회 15일전)	2018년 03월 08일 (주주총회 15일전)	2019년 03월 14일 (주주총회 15일전)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1% 이상 주주 : 소집통지서 발송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1% 미만 주주 : 전자공고	좌동	좌동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여부 및 방법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 주주 의결권 행사	좌동	좌동
개최일시	2017년 03월 24일 (금) 오전 9시	2018년 3월 23일 (금) 오후 2시	2019년 3월 29일 (금) 오전 9시

개최일이 주주총회 집중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해당
개최장소		한진빌딩 본관 26층 대강당	좌동	좌동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여부	1인 출석	1인 출석	1인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발언주주 : 개인주주 7인 - 주요 발언 요지 :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 여부 문의,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및 반대발언, 원안에 대한 수정안건 제안, 의사진행 발언	- 발언주주 : 개인주주 3인 -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발언주주 : 개인주주 8인 -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및 반대발언, 안건에 대한 상세내용 및 근거 설명 요청, 의사진행 발언

제6기 정기주주총회 당시 당사는 주주제안 및 의안 상정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재공지 시 영향 등을 고려, 소집공고를 법정 기한인 2주 전 무렵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종속회사가 포함된 연결결산 등 주요 경영활동 일정 및 위와 같은 사유로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당사 내부 상황에 맞추어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좀 더 일찍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당사는 작성 기준일 및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투표와 관련하여 당사는 주주들께서 서면으로 당사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피하고 당사가 위탁한 회사를 통해 수월하게 의결권 위임을 하실 수 있도록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는 해당 업무를 의결권 권유 전문 대행사에 위탁하여 3만주 미만 보유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권유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당사는 주주총회 당일 현장에 참석하시는 주주의 정확한 의사 확인 및 접수를 위하여 부득불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전자투표를 실시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에 현장에 참석하시는 경우 기존 의결권 행사 내역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의 경우 당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및 해당 외국인 주주의 상임 대리인을 통해 외국인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내역

① 제5기 정기주주총회

제5기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식수는 총 32,171,543주이며, 이는 의결권 있는 주식수(59,700,738주)의 53.89%입니다. 제5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은 총 3건으로 모든 안건이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제5기 주주총회			2018.03.23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②)	② 중 찬성 주식수 (비율,%) ② 중 반대·기권 주식수 (비율,%)	
제1호의안	보통	제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59,700,738	32,171,543	31,957,330 (99.33) 214,213 (0.67)	
제2호의안	보통	이사 보수 한도(50억원) 승인의 건	가결	상동	상동	24,687,296 (76.74) 7,484,247 (23.26)	
제3호의안	보통	감사 보수 한도(2억원) 승인의 건	가결	상동	상동	32,171,543 (100.00) 0 (0.00)	

* 상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우선주(536,766주로서 전기 배당 미실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기주식(2017년말 기준 총 6,486주)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② 제6기 정기주주총회

금번 2019년 3월 29일 개최된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식수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 출석을 포함하여 총 45,668,651주이며, 이는 의결권 있는 주식수(59,170,435주)의 77.18%입니다. 제6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은 총 15건으로 보통결의 8건, 특별결의 4건, 주주별 3%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보통결의 3건이었으며, 표결 결과 제2-4호 안건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의 자격)' 1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제6기 주주총회			2019.03.29		
안건	결의	회의 목적사항	가결	의결권	① 중	② 중 찬성	

	구분		여부	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의결권 행사 주식수(②)	주식수 (비율,%)
						②중 반대·기권 주식수 (비율,%)
제1호의안		제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1호	보통	제6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59,170,435	45,668,651	35,568,549 (77.88)
						10,100,102 (22.12)
제1-2호	보통	제6기 현금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가결	상동	상동	35,934,540 (78.68)
						9,734,111 (21.32)
제2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특별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관련 사항 등 (제1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40조 일부, 부칙 제1조)	가결	상동	상동	45,580,138 (99.81)
						88,513 (0.19)
제2-2호	특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 (제29조, 제30조의2, 제40조 일부)	가결	상동	상동	45,547,839 (99.74)
						120,812 (0.26)
제2-3호	특별	제2-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설치 등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일부,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가결	상동	상동	35,902,322 (78.61)
						9,766,329 (21.39)
제2-4호	특별	이사의 자격 (제31조의 2) (국민연금공단 주주제안)	부결	상동	상동	22,224,368 (48.66)
						23,444,283 (51.34)
제3호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보통	사외이사 주인기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35,679,414 (78.13)

							9,989,237 (21.87)
	제3-2호	보통	사외이사 신성환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35,350,580 (77.41)
							10,318,071 (22.59)
	제3-3호	보통	사외이사 주순식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26,775,559 (58.63)
							18,893,092 (41.37)
제4호의안		보통	사내이사 석태수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29,894,586 (65.46)
							15,774,065 (34.54)
제5호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보통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주인기 선임의 건	가결	42,947,917	29,443,324	24,017,337 (81.57)
							5,425,987 (18.43)
	제5-2호	보통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신성환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23,688,677 (80.46)
							5,754,647 (19.54)
	제5-3호	보통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주순식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18,021,847 (61.21)
							11,421,477 (38.69)
제7호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7-1호	보통	이사 보수 한도(50억원) 승인의 건	가결	59,170,435	45,668,651	31,497,304 (68.97)
							14,171,347 (31.03)
제8호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8-1호	보통	감사 보수 한도(0.4억원) 승인의 건	가결	상동	상동	36,052,563 (78.94)
							9,616,088 (21.06)

* 상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자기주식(2018년말 기준 23주) 및 우선주(전기 배당 실시)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 제5호의안은 보통결의 사항이나 주주별 의결권이 3%로 제한됩니다.

(세부원칙 1-②)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주제안 내역

주주제안 절차는 상법에 충분히 기재된 제도이므로 당사는 작성 기준일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상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사유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는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주주제안 행사 요건에 부합하시는 주주가 당사에 전년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안을 제안하여 주시면, 당사는 상법 및 그 시행령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주제안이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며, 주주총회 당일에는 해당 의안에 대해 제안 주주에게 제반 설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주주권리를 충실히 행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유)그레이스홀딩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각각 1건씩 총 2건의 주주제안이 있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17.01.01 ~ '19.06.03)

제안일자	제안주체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2019.1.31	(유)그레이스 홀딩스	감사 1인 선임의 건 등 총 6개 안건 제안	법원은 상법상 상장법인 특례규정인 6개월 주식 보유 요건을 필수 요건으로 판단, 소수주주권 행사 효력 없음 (2019라20280, 2019.03.21), 이에 따라 제안주체의 주주제안 안건 삭제	-	-	-
2019.2.7	국민연금공단	정관 일부 변경 제안 (이사의 자격 관련)	이사회에서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 (2019.03.14) 당사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본 안건 부결 (2019.03.29)	부결	48.66	51.34

(세부원칙 1-③) 기업은 배당정책 및 향후 배당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4) 최근 3개 사업년도 배당 내역

당사는 정관에 따라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일반적으로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 이사회시 현금배당 지급 및 확정 재무제표 승인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연도의 경우 해당 안건의 이사회 결의에 추가하여 주주 권리 등을 고려, 해당 안건을 주주총회에 위임, 승인을 통해 확정하였고, 주주총회 후 1개월 내에 주주에게 현금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2018 사업년도 결산배당과 관련하여 금년 2월 13일 공정공시를 통해 주주 이익환원 및 주주중시 경영의 일환과 투자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2018년도 배당성향을 약 5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배당 계획과 중장기적으로 현금유보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배당을 확대할 예정임을 별도로 공시하였습니다. 배당 실적 측면에서는 최근 3년간 결손으로 배당을 지급하지 못했던 2016년을 제외하고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차등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한 바 없습니다. 당사의 최근 3년간의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사업 연도	결산 월	주식 종류	주식 배당	현금배당					
				액면가	주당 배당금	총 배당금	시가 배당률	배당성향	
								연결 기준	별도 기준
2018	12	보통주	미해당	2,500	300	17,751,130,500	1.0	-43.9	47.3
		종류주	미해당	2,500	325	172,346,525	1.6		
2017	12	보통주	미해당	2,500	125	7,396,305,125	0.7	3.4	3.1
		종류주	미해당	2,500	150	79,544,550	1.2		
2016	12	보통주	미해당	2,500	미실시	미실시	-	-	-
		종류주	미해당	2,500	미실시	미실시	-	-	-

* 주당 배당금은 분기, 중간 배당금과 결산 배당금을 합산

* 배당성향 = 배당금총액 / 연결 or 별도 당기순이익

* 시가배당률 = 주당배당금 / 배당기준일 주가 x 100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부원칙 2-①)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 현황

(작성기준일 : 2019년 6월 3일, 단위 : 주)

구분		발행가능주식수	발행주식수	비고
보통주		235,000,000	59,170,458	-
종류주	우선주	15,000,000	536,766	-

당사 우선주는 설립 시 발행되었습니다. 해당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배당으로 더 배당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2018년도 결산배당을 실시하였으므로 해당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당사 주식의 의결권은 상법 제369조(의결권)에 따라 1주마다 1개로 하며,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보고서 제출일 기준 24주)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2) 주요 IR 내역

당사는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실적 자료를 DART 및 당사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IR 미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제공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기말 이후 실적 발표일 전까지는 IR 활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하시는 경우 IR 담당부서 연락처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IR 미팅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18.01.01 ~ '19.06.03)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비고
18.03.26	기관투자자	IR	회사 소개 및 실적 발표	
18.03.27	기관투자자	IR	회사 소개 및 실적 발표	
18.04.02	기관투자자	IR	회사 소개 및 실적 발표	
18.05.28	기관투자자	IR	회사 소개 및 실적 발표	

18.05.29	기관투자자	IR	회사 소개 및 실적 발표	
18.08.09	기관투자자	NDR	회사채 발행 관련 투자자 모집	
18.08.13	기관투자자	NDR	회사채 발행 관련 투자자 모집	
18.08.16	기관투자자	실사	회사채 발행 관련 대표주관사 실사	1회 회사채
18.08.20	기관투자자	NDR	회사채 발행 관련 투자자 모집	
18.08.21	기관투자자	NDR	회사채 발행 관련 투자자 모집	
18.08.27	기관투자자	IR	회사 소개 및 실적 발표	
18.08.30	기관투자자	IR	회사 소개 및 실적 발표	
18.09.06	기관투자자	IR	회사 소개 및 실적 발표	
18.11.28	기관투자자	IR	회사 소개 및 실적 발표	
18.12.03	기관투자자	IR	회사 소개 및 실적 발표	
18.12.05	기관투자자	IR	회사 소개 및 실적 발표	
19.03.19 ~ 19.03.28	기관투자자	IR	한진그룹 중장기 비전과 성장전략 2018년 사업년도 배당 계획	
19.04.16	기관투자자	실사	회사채 발행 관련 대표주관사 실사	2회 회사채

또한,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해 영문 사이트(<http://www.hanjinkal.co.kr/en/main/index.do>)를 운영하고 있으며 IR 담당부서는 국내 주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문공시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중요 IR 사항에 대해서는 위 영문 사이트 내 IR 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공정공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18.01.01 ~ '19.06.03)

공시일자	공시제목	주요 내용
19.02.13	장래사업·경영계획	한진그룹 중장기 비전과 성장전략
19.02.13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	2018년 사업년도 배당 계획

한편, 당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3)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통제 장치 현황 등

당사는 내부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회 규정 내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등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자기거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결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의 목적으로 작성 기준일 이후 제6기 정기주주총회시 정관 변경을 통해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5월 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및 규정 제정,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임, 내부거래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결을 위원회에 위임하였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 심의 의결권을 가지며, 자료제출 요구권, 내부거래 시정 조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2018년 연간 기준 최대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업거래 (2017년 매출액의 5% 이상 건 기준)

(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내용	거래금액
(주)대한항공	계열회사	매출	2018년 1월 ~ 12월	배당금수익, 브랜드사용료 등	41,297
		매입		지급수수료 등	178
토파스여행정보(주)	계열회사	매출	2018년 1월 ~ 12월	배당금수익, 브랜드사용료	9,482
(주)진에어	계열회사	매출	2018년 1월 ~ 12월	배당금수익 등	4,798

Ⅲ. 이사회

1. 이사회 운영 현황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3-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 및 자회사의 중장기 전략계획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등을 심의·의결하는 등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중요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사회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 내 심의·의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이사회 규정 제9조)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재무제표의 승인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및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정관의 변경
-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및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이사의 업무 감독권
-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이사의 보수
- 주식의 소각
-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회사 및 자회사의 중장기 전략계획 승인
- 자회사 브랜드 사용 계약 체결 및 변경
-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및 지출
- 50억원 이상의 구매 업체 변경 및 신규업체 선정
- 100억원 이상의 타법인 출자·소유주식 매각
- 50억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 및 매각계획 처분 결정
-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
- 대외공시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 신주 및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양도제한주식의 양도 승인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전환사채의 발행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신주인수권의 양도성 결정
- 주식 유·무상 증자
-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소각
- 200억원 이상의 당좌차월 약정 및 Credit Line 신규 약정
- 200억원 이상의 신규 차입(CP 발행 포함) 계약
- 200억원 이상의 기존 차입(CP, 당좌차월, Credit Line)의 1년 이상 만기 연장
- 200억원 이상의 채무보증
- 기말 회계결산 보고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이사에 대한 경업의 승인
- 이사회 소집권자의 지정

5. 기타 법령, 정관,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이사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 의사결정

8.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근거로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 기준일 이후 설립된 내부거래위원회에 회사의 내부거래에 대한 의결을 위임하였습니다.

2. 이사회 관련 정책

(세부원칙 3-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과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1)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당사는 그룹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전략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합니다. 이 일환으로 임원들의 역량 강화 및 최고경영자(대표이사) 후보군 양성을 위하여 임원 승진 후 '임원경영능력 향상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양성된 후보군에 대해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후보자인지 여부를 검증하여 이사 후보자로 추천하고, 해당 후보자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로 선임됩니다. 또한,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연속성을 고려하여 수인의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유고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리스크 관리 및 준법경영을 위한 정책

당사의 내부 리스크 관리 및 통제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로 내부 감사기구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내부 감사기구는 감사계획 수립, 집행, 평가 등을 진행하며, 매 분기마다 당사의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감사 진행 경과, 재무·비재무적 리스크 및 조치 현황 등을 보고받고 경영진에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기준 및 해당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시 제출 기관별로 업무를 담당, 총괄하는 임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관리팀 내 2명의 인원을 공시 담당자로 지정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내부 통제 정책

당사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책임은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독에 대한 책임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상근 임원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책임자인 내부회계관리자로 선임하여 제도 운영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독 역할을 내부 감사기구에 위임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자는 제도 운영 현황을 내부 감사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자는 연중 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매 사업연도별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내부 감사기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부 감사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에 따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인 2019년 중 당사는 외부 회계법인과 협업하여 사내 전사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통제 절차를 보완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전면 재구축할 예정이며,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근거하여, 사내 관련 규정(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기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재구축과 동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며 동 조직은 사내 각 유관부서에서 통제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수립된 통제 절차가 적절한지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내부 감사 부서인 감사팀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사내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독 역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해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각 위험을 예방 또는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이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에 대하여 내·외부 전문 기관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전사의 내부통제 절차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 구성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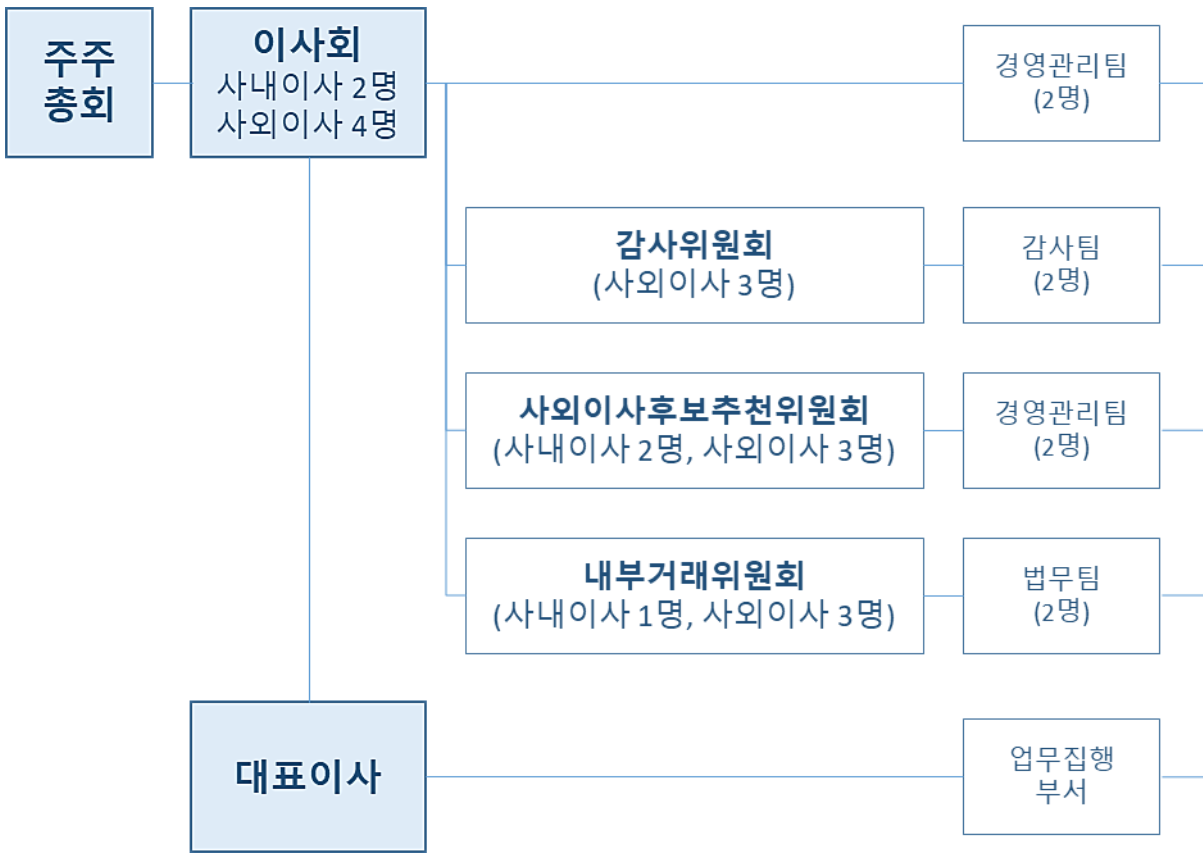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4-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 시점의 당사의 이사회 및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전기말 자산총액 2조원 초과에 따른 대규모 상장법인 및 기타 변경사항을 반영한 보고서 제출일 기준 조직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사회 구성 현황

① 보고서 작성 기준일

(기준일 : 2018년 12월 31일)

구분	성명	직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사내이사	조양호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2014.03.21	2020.03.23	기업경영 일반	- 한진그룹 회장
사내이사	조원태		2014.03.21	2020.03.23	기업경영 일반	- 대한항공 대표이사 총괄 부사장
사내이사	석태수	대표이사	2013.08.01	2022.03.28	기업경영 일반	- 한진 대표이사 사장 - 대한항공 미주지역본부장 - 대한항공 경영기획실장
사외이사	조현덕		2013.08.01	2019.03.29	법률	-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외 이사	김종준		2016.03.18	2019.03.29	금융	- 하나은행 은행장
사외 이사	이석우		2017.03.24	2020.03.23	법률	-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② 보고서 제출일 기준

(작성기준일 : 2019년 06월 3일)

구분	성명	직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사내 이사	조원태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장	2014.03.21	2020.03.23	기업경영 일반	- 대한항공 대표이사 총괄 부사장
사내 이사	석태수	대표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2013.08.01	2022.03.28	기업경영 일반	- 한진 대표이사 사장 - 대한항공 미주지역본부장 - 대한항공 경영기획실장
사외 이사	이석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2017.03.24	2020.03.23	법률	-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사외 이사	주인기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19.03.29	2022.03.28	회계(교수)	- 아시아태평양 회계사연맹 회장 - 한국경영학회 회장 - 한국회계학회 회장
사외 이사	신성환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2019.03.29	2022.03.28	재무(교수)	-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 금융감독원 금융발전심의위원 -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사외 이사	주순식	감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2019.03.29	2022.03.28	공정거래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장/ 소비자본부장 - 경제기획원 지역경제1과장

* 당사 정관 제31조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에 이르기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29조에 따라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4인),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상법 제542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가장 최초로 선임된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전체를 대표하여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외이사 지원 조직을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임원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나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

(작성기준일 : 2019년 6월 3일)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비고
	직책	구분	성명		
감사위원회 (총 3인)	위원장	사외이사	주인기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외부감사인 선정 승인 등	
	위원	사외이사	신성환		
	위원	사외이사	주순식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총 5인)	의장	사내이사	조원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과 경력 및 역할 수행 정도를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위원	사내이사	석태수		
	위원	사외이사	이석우		
	위원	사외이사	신성환		
내부거래 위원회 (총 4인)	위원장	사외이사	주순식	내부거래 심의 의결, 내부거래 시정 조치 요구 등	
	위원	사내이사	석태수		
	위원	사외이사	이석우		
	위원	사외이사	신성환		

*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됩니다.

* 보고서 작성 기준일(2018년 12월 31일)에는 당사에 설치된 이사회 내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작성대상기간 : '17.01.01 ~ '19.06.03)

구분	성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재직여부
사내이사	석태수	2013.08.01	2022.03.28	2019.03.29	중임	여

	조양호	2014.03.21	2020.03.23	2019.04.07	중임	부
	조원태	2014.03.21	2020.03.23	2017.03.24	중임	여
	조양호	2014.03.21	2020.03.23	2019.04.07	별세	부
	허정권	2016.03.18	2019.03.17	2017.03.07	사임	부
사외이사	조현덕	2013.08.01	2019.03.29	2019.03.29	임기만료	부
	김종준	2016.03.18	2019.03.29	2019.03.29	임기만료	부
	이석우	2017.03.24	2020.03.23	2017.03.24	신규선임	여
	주인기	2019.03.29	2022.03.28	2019.03.29	신규선임	여
	신성환	2019.03.29	2022.03.28	2019.03.29	신규선임	여
	주순식	2019.03.29	2022.03.28	2019.03.29	신규선임	여

이사회는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 재무/회계, 공정거래 등 기업가치의 실질적 제고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자격, 경력 등을 검증하고 법조계, 학계 등 출신 계열 및 전문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합니다.

(세부원칙 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주주총회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

(작성대상기간 : '18.01.01 ~ '19.06.03)

정보제공일	주주총회일	이사 후보		정보제공 내역	비고
		구분	성명		
2019.03.14	2019.03.29	사내이사	석태수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검직현황 등	
2019.03.14	2019.03.29	사외이사	주인기	상동	
2019.03.14	2019.03.29	사외이사	신성환	상동	
2019.03.14	2019.03.29	사외이사	주순식	상동	

보고서 기준일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 후보군 전체를 검증, 추천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사외이사 후보자는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추천되고 있으며, 사내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 결의를 통해 추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 29일에 개최된 제6기 정기주주총회 당시 이사 후보자 전원은 (당시 사외이사 후보자 주인기, 신성환, 주순식 및 사내이사 후보자 석태수) 각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후보자 검토 및 추천 결의를 필요하였습니다.

당기 주주총회시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제공은 상법상 기한인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된 주주제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행사 효력을 판단하는 중인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한편,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이사회에서의 활동 내역, 참석률 등의 정보를 매 분기 공시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서도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당기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일괄 상정, 개별 표결 방식으로 선임하였고, 이에 따라 이사 선임 안건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이사 후보의 선임이 가능하므로 적법한 주주제안에 따라 추천된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그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없습니다.

(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조원태	1976.01	회장	등기임원	상근	대표이사 회장	- USC MBA - 대한항공 대표이사 총괄 부사장
석태수	1955.11	사장	등기임원	상근	대표이사 사장	- 서울대 경제학 - MIT MBA - (주)한진 대표이사
이석우	1949.01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 서울대 법학 -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주인기	1949.02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 연세대 경영학 - 뉴욕대 경영학 석사/회계학 박사 - 아시아태평양 회계사연맹 회장
신성환	1963.02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 서울대 경제학 - MIT 경영학 석사/박사 -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주순식	1953.11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 서울대 경제학 학사 - 하와이대 경제학 석사/박사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GAUD REAU MICHEL	1956.12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안전팀장	- Carleton University Economics & Psychology - 캐나다 교통국 Director

성명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이성환	1963.02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재무관리팀장, 재무 Control 팀장	- 단국대 회계학 - (주)대한항공 회계부담당
이용국	1965.10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감사팀장	- 서울대 경영학 - (주)대한항공 재무본부 부분부장 겸 자금전략실장
이준구	1960.07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법무팀장	- 서울대 법학 - (주)한진 법무실장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 및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에 후보 검증 및 추천 단계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으며, 미등기임원의 경우에도 임원 승진을 위한 종합 심사시 주주에 대한 의무와 책임 관점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사외이사의 책임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5-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과의 이해관계

사외이사와 당사·계열회사 등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보고서 작성 기준일

(작성기준일 : 2018년 12월 31일)

성명	과거 재직여부		최근 3개 사업년도 거래내역	
	해당기업	해당기업의 계열회사	해당기업	해당기업의 계열회사
조현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종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석우	없음	(주)대한항공 사외이사 ('07년~'17년)	없음	없음

② 보고서 제출일 기준

(작성기준일 : 2019년 6월 3일)

성명	과거 재직여부		최근 3개 사업년도 거래내역	
	해당기업	해당기업의 계열회사	해당기업	해당기업의 계열회사
이석우	없음	(주)대한항공 사외이사 ('07년~'17년)	없음	없음
주인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신성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순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자 선정시 후보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통한 확인 내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 인물 정보, 검색 결과 등을 추가로 확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로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 및 계열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분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사외이사별 재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6년 초과 장기재직한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① 보고서 작성 기준일

(작성기준일 : 2018년 12월 31일)

성명	재직기간	6년 초과 장기재직시 그 사유
조현덕	5년 4개월	미해당
김종준	2년 9개월	미해당
이석우	1년 9개월	미해당

② 보고서 제출일 기준

(작성기준일 : 2019년 6월 3일)

성명	재직기간	6년 초과 장기재직시 그 사유
이석우	2년 2개월	미해당
주인기	2개월	미해당
신성환	2개월	미해당
주순식	2개월	미해당

(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보고서 작성 기준일

(작성기준일 : 2018년 12월 31일)

성명 (감사위원)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현직	겸직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재직기간	겸직기관 상장여부
조현덕	2013.08.01	2019.03.29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	-	-
김종준	2016.03.18	2019.03.29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	-	-	-
이석우	2017.03.24	2020.03.23	법무법인 두레 변호사	-	-	-	-

② 보고서 제출일 기준

(작성기준일 : 2019년 6월 3일)

성명	최초	임기	현직	겸직현황
----	----	----	----	------

(감사위원)	선임일	만료일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재직기간	겸직기관 상장여부
이석우	2017.03.24	2020.03.23	법무법인 두레 변호사	-	-	-	-
주인기 (감사위원)	2019.03.29	2022.03.28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사)사회 연대은행	사외이사	3년 2개월	-
신성환 (감사위원)	2019.03.29	2022.03.28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	-	-
주순식 (감사위원)	2019.03.29	2022.03.28	법무법인 울촌 고문	대한전선	사외이사 (감사위원)	3년 6개월	상장 (유가증권)

* 상기 겸직현황은 사외이사가 다른 기관(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을 포함)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기재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를 제외하고)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로만 참석자로 구성된 회의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신임 사외이사(감사위원) 3인이 당사 및 당그룹 사업 현안 이해를 높여감에 따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충실한 경영 감독 및 실질적인 자문·조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사는 담당 임원 및 경영관리팀 내 담당자 2인(필요시 감사팀 지원 인력 포함)을 선정하여 자원 및 정보 제공 전담 창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임 사외이사에 대해 그룹 소개 등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경영현황을 조기에 파악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수시로 설명하고 사외이사의 제안 사항에 대해 회사가 검토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쌍방향 소통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6-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6-②) 사외이사의 평가결과는 보수 산정 및 재선임 결정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는 현재 참석률, 제언의 실효성 등을 정성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그 이외 별도의 항목으로 외부평가 등 사외이사 개별 평가를 실시하거나 이를 사외이사의 보수 및 재선임 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당사 내부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평가방법 및 규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상은 사외이사 기본 급여 및 기타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보상 수준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사보수 한도를 통해 확정되고 있으며, 1인당 평균보수액 등을 사업보고서 내 임원의 보수 항목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6. 이사회 운영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7-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18.01.01 ~ '19.06.03)

년도	회차	정기/ 임시	개최일	안건 통지일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2018	1차	정기	02.08	02.06	6/6	결의	2017년(제5기) 회계결산(안)	가결
						결의	차입금 만기 연장 및 차환의 건	가결
						보고	2017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2017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보고	2018년 한진칼 사업계획 보고	-
	2차	임시	03.07	02.21	6/6	결의	제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결의	제5기 현금배당(안) 심의의 건	가결
						결의	제5기 확정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가결
	3차	정기	05.10	4.20	4/6	결의	부동산담보 대출 만기 차환(연장)의 건	가결
						보고	2018년(제6기) 1분기 회계결산(안)	-
	4차	정기	08.03	07.23	6/6	결의	한진칼 회사채 발행의 건	가결
						결의	주식담보대출 만기연장의 건	가결
						결의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가결
						보고	제6기 반기 회계결산(안)	-
	5차	정기	11.09	10.25	5/6	결의	(주)한진칼 보유 상표권 사용계약 연장 승인	가결
						보고	제6기 3분기 회계결산(안)	-
	6차	임시	12.05	12.03	5/6	결의	신규 차입(안)	가결
	2019	1차	정기	01.29	01.16	5/6	결의	2018년(제6기)회계결산(안)
결의							준법통제기준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가결
결의							2019년 1분기 만기도래 주식담보대출	가결

						운영(안)	
						결의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가결
						보고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보고	2019년 한진칼 사업계획 보고 -
	2차	임시	03.14	03.12	4/6	결의	회사채 발행의 건 가결
						결의	제6기 현금배당(안) 가결
						결의	제6기 확정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주주제안 검토의 건 가결
						결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의 건 가결
						결의	제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3차	임시	04.01	03.29	6/7	결의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4차	임시	04.24	04.22	5/6	결의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5차	정기	05.08	04.29	6/6	결의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가결
						결의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가결
						결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결의	내부거래위원회 신설의 건 가결
						결의	계열회사와의 거래총액한도 승인의 건 가결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개정 결과 보고 -
						보고	제7기 1분기 회계결산(안) -

(세부원칙 7-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습니다. 동기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18년 전기간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개최일자	02.08	03.07	05.10	08.03	11.09	12.05
사내이사	조양호	출석	출석	불참	출석	불참	불참
	조원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석태수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이사	조현덕	출석	출석	불참	출석	출석	출석
	김종준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석우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	----	----	----	----	----	----

②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개최일자	01.29	03.14	04.01	04.24	05.08
사내이사	조양호	불참	불참	불참	-	-
	조원태	출석	불참	출석	출석	출석
	석태수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이사	조현덕	출석	출석	-	-	-
	김종준	출석	출석	-	-	-
	이석우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주인기	-	-	출석	출석	출석
	신성환	-	-	출석	불참	출석
	주순식	-	-	출석	출석	출석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및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구분	재직기간	출석률(%)				찬성률(%)			
			재직 평균	최근 3개년			재직 평균	최근 3개년		
				2018	2017	2016		2018	2017	2016
조양호	사내	2014.03.21 ~ 2019.04.07	29.6%	50%	77.8%	20%	100%	100%	100%	100%
조원태	사내	2014.03.21 ~ 현재	89.3%	100%	66.7%	80.0%	100%	100%	100%	100%
석태수	사내	2013.08.01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허정권	사내	2016.03.18 ~ 2017.03.07	100%	-	100%	100%	100%	-	100%	100%
조현덕	사외	2013.08.01 ~ 2019.03.29	95.6%	83.3%	100%	90.0%	100%	100%	100%	100%
김종준	사외	2016.03.18 ~ 2019.03.29	96.3%	100%	88.9%	100%	100%	100%	100%	100%
이석우	사외	2017.03.24 ~ 현재	100%	100%	100%	-	100%	100%	100%	-

*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

7. 이사회 내 위원회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8-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이상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기타 위원회는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원칙 8-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별 주요 역할, 구성 현황은 '3. 이사회 구성 - (2)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및 자격·임면 등은 각 위원회별 운영 규정을 두어 정의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결의된 모든 사항은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다음 장 IV. 감사기구 내용 참조)를 제외한 위원회의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회의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18.01.01 ~ '19.06.03)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1차	2019.03.14	4/5	결의사항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가결

* 당사는 2019년 본 위원회 운영을 개시한 바,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을 기재 관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내부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회의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18.01.01 ~ '19.06.03)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1차	2019.05.08	4/4	결의사항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 주순식 사외이사를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 당사는 2019년 본 위원회 운영을 개시한 바,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기재 관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V. 감사기구

1. 내부감사기구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9-①)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1) 상근감사

당사는 작성 기준일인 2018년 12월 31일 현재 내부감사기구로 상근감사 1명을 두고 있으며, 관련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책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구분	성명		
상근감사	-	윤종호	-	

당사는 상근감사 선임 시 회사로부터의 독립성을 견지하기 위해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및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 해당 회사의 이사 및 자회사의 이사 등인 경우 상근감사의 겸임이 제한됩니다.

2) 감사위원회

한편, 당사는 2018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게 되어,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29일 개최된 제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책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구분	성명		
위원장	사외이사	주인기	재무·회계 전문가 GS건설(주) 감사위원 (2016.03.18~2019.03.22)	2019년 4월 18일 제1차 감사위원회를 통해 위원장으로 선임됨
위원	사외이사	신성환	재무·회계 전문가 (주)KB금융지주 감사위원 (2014.03.28~2015.03.27)	

위원	사외이사	주순식	공정거래 전문가 대한전선(주) 감사위원 (2015.09.25~현재)	
----	------	-----	---	--

당사 정관 제4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정원은 3명이고, 위원의 2/3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2인의 재무 전문가 및 1인의 공정거래 전문가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됩니다.

(2) 내부감사기구 운영 현황

1) 상근감사

상근감사는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근감사는 상법 제412조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의 권한 및 책임은 당사 정관 제44조 및 관련 법령을 통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상근감사를 대상으로 내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상장회사 감사회 가입을 통해 해당 기관의 조찬강연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관리팀 및 재무관리팀 직원 일부가 상근감사의 내부감사 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팀 직원은 법학 및 경영학 전공자로서 이사회 등 경영관리 및 경영기획 업무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 감사의 이사회 출석 관련 사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팀 직원은 회계, 재무, 자금 관련 업무에 다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으로 감사의 회계감사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팀은 대표이사 산하 조직이나 상근감사에게 보고되는 내용 및 정보 또는 지원 활동은 경영진과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상근감사의 지시 및 요청 사항은 각 팀의 선임자가 상근감사에게 해당 내용을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상근감사 지원조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경영관리팀	3	- 파트장 1명 (6년) - 과장 1명 (3년) - 사원 1명 (4년)	- 이사회 관련 자료 제작 및 사전 송부 등 - 주요 기업 행사 등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외부활동 수행 지원

재무관리팀	2	- 파트장 1명 (3년) - 차장 1명 (6년)	- 회계감사 업무 지원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업무 지원
-------	---	-------------------------------	--

2)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상근감사와 마찬가지로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점검합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의 규율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9년 5월 8일 이사회를 통해 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규정 내 정의된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한진칼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 (권한 및 의무)
<p>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p> <p>(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권 (2) 주주총회 의안, 서류에 대한 조사 및 주주총회 보고 의무</p> <p>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p> <p>(1) 이사회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 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이사회 제출 의무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 (5) 기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p> <p>3. 감사에 관한 사항</p> <p>(1) 회사의 업무·재산 감사권 (2) 상법 제342조의2의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재산 조사권 (3)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이사의 보고 수령권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대한 대표권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권한 (6) 외부감사인 선임, 해임에 대한 승인권 (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수령 (8)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p>

- (9)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 (10) 연간 감사계획 및 전년도 감사 실적을 보고받을 권한
- (1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이사회 보고 의무

4.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외부감사인 등은 감사위원회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감사위원회 교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	주요 교육내용	교육시간
2019.04.18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전원	한진그룹 소개 등	약 1시간
2019.05.08	한영회계법인	전원	2019년 개정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핵심감사제' 안내 등	약 1시간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감사팀의 임원 및 직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팀 임원은 내부감사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전문 인력이며, 직원은 공인회계사로 감사위원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춘 자입니다.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감사팀	2	- 전무 1명 (4년) - 부장 1명 (6년)	- 감사위원회 연간 계획 수립 - 감사위원회 안건 취합 및 사전 송부 - 감사위원회 진행 지원 및 의사록 작성 등

내부감사팀은 대표이사 산하조직이나, 조직 및 자회사 업무에 대한 정기, 수시, 특별감사 등의 결과를 취합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필요시 내부감사팀 및 당사의 임직원에게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에 대한 보상은 사외이사와 동일하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보수 한도에 대한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보수액 등을 사업보고서 내 임원의 보수 항목을 통

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9-②)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3) 내부감사기구 활동 내역

1) 상근감사

상근감사는 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 동안 개최된 당사의 모든 이사회에 출석하여 개별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상근감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18년 전기간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제1차	02월 08일	2017년(제5기) 회계결산(안)
		차입금 만기 연장 및 차환의 건
		2017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017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제2차	03월 07일	2018년 한진칼 사업계획 보고
		제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제5기 현금배당(안) 심의의 건
제3차	05월 10일	제5기 확정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부동산담보 대출 만기 차환(연장)의 건
제4차	08월 03일	2018년(제6기) 1분기 회계결산(안)
		한진칼 회사채 발행의 건
		주식담보대출 만기연장의 건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제5차	11월 09일	제6기 반기 회계결산(안)
		(주)한진칼 보유 상표권 사용계약 연장 승인
제6차	12월 05일	제6기 3분기 회계결산(안)
제6차	12월 05일	신규 차입(안)

②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제1차	01월 29일	2018년(제6기) 회계결산(안)
		준법통제기준 승인의 건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2019년 1분기 만기도래 주식담보대출 운영(안)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2019년 한진칼 사업계획 보고
제2차	03월 14일	회사채 발행의 건
		제6기 현금배당(안)
		제6기 확정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주주제안 검토의 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의 건
		제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또한, 상근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에 따라 매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상근감사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 회사의 대표회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작성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거짓 기재 및 누락 여부 및 시정 계획이 실질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	이사회 보고일	평가 결과
2017 사업년도	2018년 02월 08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 중
2018 사업년도	2019년 01월 29일	상동

상근감사는 상법에 따라 필요시 회사 및 자회사를 대상으로 영업 보고,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상근감사 지원조직이 이를 수행하여 상근감사에게 보고합니다.

상근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 서류에 대해 조사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를 서명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감사록의 작성, 주주총회 보고 관련 사항 또한 해당 법령에 명문화 되어있으며,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 절차는 없습니다.

당사는 2017년 4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으며,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상근감사의 활동 내역은 없습니다.

2)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2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개별 이사 출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1차	2019.04.18	3/3	결의사항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보고사항	감사위원회 규정(안) 보고	-
2차	2019.05.08	3/3	결의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개정의 건	가결
			보고사항	제7기 1분기 회계결산(안)	-

* 주인기 감사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② 개별 이사 출석 내역

구분	년도	2019	
	회차	1차	2차
	개최일자	04.18	05.08
사외이사	주인기	출석	출석
사외이사	신성환	출석	출석
사외이사	주순식	출석	출석

*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 의안, 서류에 대해 조사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업무 관련 감사록 및 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 결과 등을 기재하고 감사록에는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서명 확인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외부감사인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10-①)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당사는 외부감사법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고, 외부감사인 선임시 감사 및 비감사 업무 실적, 회사에 대한 이해, 감사수행 전략, 감사품질관리계획, 회계감사 관련 감리 및 소송 내역, 감사 참여 인원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을 2017년 4월에 개최된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5기~제7기)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 승인하였습니다. 외부감사법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의해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를 동일 감사인이 수행함으로 2018년 이후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9년 상반기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므로, 한영회계법인과 감사용역계약이 종료되면 외부감사법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임 승인할 예정입니다.

(2)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제공 등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감사계약 수임일로부터 현재까지 당사에 제공한 업무들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상근감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를 위해 계약 대상 업무가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직무제한)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독립성 훼손 가능성, 계약 필요성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외부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일부 비감사업무 중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사전 협의 및 동의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설치된 감사위원회 또한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제공시, 독립성을 견지하기 위해 상기 원칙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외부감사계약 체결 이후 당사와 한영회계법인과 체결한 비감사 용역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6기 (전기)	2018.7	세무조정	2018.07.26~2018.08.31 2019.02.07~2019.04.01	10.5 백만원	
	2018.4	경영자문계약검토	2018.04.25~2018.05.10	7백만원	
제5기 (전전기)	2017.4	세무조정	2017.07.13~2017.08.31 2018.02.12~2018.04.02	6백만원	

한편,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외부감사법 제24조(주주총회등에의 출석)에 따라 당사의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3) 외부감사인 평가

당사 상근감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회계법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보고 받았으며 외부감사인 중 매니저 직급 이상을 가진 직원과 서면 및 대면 회의를 통해 감사결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 감사 위험, 내부통제 미비점, 부정 및 법규 위반 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작성 기준일 이후 설치 된 감사위원회 또한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감사 방법론의 적정성, 내부감사부서와의 협력 정도, 감독당국의 제재 현황 및 감사담당 파트너의 주기적인 교체 여부 등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세부원칙 10-②)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4)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보고서 작성기준일 기준 상근감사 / 보고서 제출일 기준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매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매 분기 결산 감사(검토) 후에 직접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상기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의에 대비하여 당사 CFO 등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금년 2분기(5월 8일)부터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는 경영진의 참석없이 회의를 진행하였고, 향후에도 경영진의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구분	핵심 지표	준수여부	
		○	X
주주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¹⁾		√
	전자투표 실시 ¹⁾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¹⁾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²⁾
이사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 ³⁾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집중투표제 채택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⁵⁾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	
감사기구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1회 이상 교육 제공		√ ⁶⁾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⁷⁾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전문가 존재 여부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⁸⁾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⁹⁾	

- 1) 항목은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 주주총회 기준
- 2) 항목은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대상 기간 내 (2018년 중)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X로 표기하였으나,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 주주총회 기준으로 실시함 (2019년 2월 13일)
- 3)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교육 제도,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 절차 운영
- 4) 리스크관리(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규정), 준법경영(준법지원인, 준법통제기준), 내부회계관리(내부회계관리자, 내부회계관리규정)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 운영 중
- 5) 사외이사에 대한 정책을 마련, 운영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검증하여 후보자 선임)
- 6) 항목은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대상 기간 내 (2018년 중)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X로 표기하였으나,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2건 실시함 (2019년 4월 18일, 5월 8일)
- 7) 감사 업무 계획 및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위원회 보고를 위해 감사팀을 별도로 운영 중 (감사팀의 직제는 CEO 산하로 인사사항은 CEO 전결)
- 8) 항목은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대상 기간 내 (2018년 중)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X로 표기하였으나, 금년 2분기부터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함 (2019년 5월 8일)
- 9) 당사 감사 규정에 내부감사기구가 경영 관련 중요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이 피감회사나 관계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감사 규정 제4조)